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동영 (통일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, 북한산 식품의 반입 과정에서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반입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요구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서류와 환적 증명서류를 반입 승인단계에서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2026. 1. 16. ~ 2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식품을 반입하려는 경우 「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

제2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반입의 경우에는 「관세법」 상 환적 또는 복합환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4조 중 “제25조제1항·제3항”을 “제25조제1항·제4항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반출·반입의 승인 신청)	제25조(반출·반입의 승인 신청)
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·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·반입 7일 전까지 반출·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일부장관은 반출·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5. <u>식품을 반입하려는 경우 「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</u>
5. (생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<신설>	② <u>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반입의 경우에는 「관세법」 상 환적 또는 복합환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</u>

② ~ ⑤ (생략) 제34조(대리신청 등) 대리인이 제12조제1항·제2항, 제13조, 제14조제1항, 제15조, 제16조제1항·제3항, 제17조, 제25조제1항·제3항, 제27조제1항·제3항, 제29조제2항·제3항 및 제33조제1항·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·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 제41조(다른 법률의 준용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”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. 1. ~ 9. (생략) <신설> ④·⑤ (생략)	③ ~ ⑥ (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 제34조(대리신청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제25조제1항 · 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41조(다른 법률의 준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④·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통일부 남북경제협력과	
연 락 처	(02) 2100 - 5832